

2023. 2. 28. 실시
중소기업중앙회장선거

선거운동 방법 및 금지 · 제한행위 안내

2023. 1.

KBIZ 중소기업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

일러두기

- ◆ 본 안내서에 열거되지 아니한 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방법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중앙회정관」, 「중소기업중앙회 임원선거규정」등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 용어의 표기

명칭(Full name)	안내서 표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규칙
중소기업중앙회 정관	정관
중소기업중앙회 임원선거규정	규정
중소기업중앙회	중앙회
제40조 제1항	제40조 제1항 또는 § 40①

차 례

I. 선거운동 개요

II. 세부 선거운동의 금지·제한 사항

1. 후보자 또는 선거인 등 매수 및 이해유도 금지3
2. 상근 임직원의 선거운동금지 등5
3. 사전선거운동의 금지6
4. 호별방문 등의 금지8
5.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행위 금지9
6. 법정 선거운동방법 외의 선거운동 금지10

III.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10

IV.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11

I 선거운동 개요

○ 선거운동 :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 선거운동 방법 (법§ 53⑥⑦, 규칙§ 4조의2, 정관§ 53⑤, 규정§ 13④)

- ∴ 선전 벽보의 부착, 선거 공보와 인쇄물의 배부,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 개최
- ∴ 전화(문자메시지 포함)·컴퓨터통신(전자우편 포함)
- ※ 선거운동 주체는 후보자로서 세부사항은 조합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

· 선거운동의 금지·제한

- ∴ 후보자 또는 선거인 등 매수 및 이해유도 금지, 상근 임직원의 선거운동금지 등
- ∴ 사전선거운동의 금지, 호별방문 등의 금지
- ∴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행위 금지, 법정 선거운동방법 외의 선거운동 금지
- ※ 세부사항은 “II. 세부 선거운동의 금지·제한 사항” 참고

·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규정 §13①))

- ∴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에 대해 당선이나 낙선의 의도 없이 행해지는 단순한 의견의 개진이나 의사표시 행위
- ∴ 중앙회 및 정회원의 사업계획 집행상 불가피한 회의의 소집 또는 회의에 참가하는 행위
- ∴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허가한 선거운동을 위한 연설회 등 의 작성
- ∴ 중앙회 및 정회원의 정관에 규정된 사업수행을 위한 통상적인 업무행위

○ 선거운동 기간 :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법§ 53①, 규정§ 13⑤)

- ※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중이라도 위 규칙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여야 함.

○ 벌 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137②)

Tip

‘선거운동’의 판단기준

‘선거운동(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선거가 실시되기 오래 전에 행해져서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행위라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당해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으나, 행위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울수록 명시적 표현이 없이도 그 특정 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식될 수 있음. 문제된 행위와 특정 선거와의 관련성은 단순히 어떤 사람이 향후 언젠가 어떤 선거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를 전제로 그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함.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판결 참조)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정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란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을 말함.

II 세부 선거운동의 금지·제한 사항

1. 후보자 또는 선거인 등 매수 및 이해유도 금지

(법 §53②·③, 정관 §53①·②, 규정 §13②·③)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언제든지

○ 내 용

-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제공받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도 금지됨.

-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나 후보자에게 금전·물품·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제공받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도 금지됨.

○ 벌 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법§ 137①)

Tip '제공의 의사표시'의 의미

'제공의 의사표시'는 금전·물품·향응 등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성립함. 의사표시는 문서에 의하든 구술에 의하든 무방하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불문함(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2001헌바26 결정).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또는 그의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달력·수첩·택상일기·메모판 등의 홍보물을 제한된 범위의 거래처, 영업활동과 관련된 유관기관·단체에 배부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지인이 선거인에게 현금을 제공한 후, 같은 날 전화하여 그 입후보예정자를 후보자로 추천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의 지인이 선거인의 사무실에서 “그 후보자가 중앙회장을 하면 잘 할 것 같다”면서 현금을 신문지 밑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특정 연합회의 회장인 선거인이 입후보예정자로부터 발전기금을 지원받기로 약속 받은 후 해당 연합회의 이사회에 참석한 선거인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
- 후보자가 선거인인 정회원 모임의 회장에게 “내가 회장이니 회원들 상대로 좀 해달라. 선거일이 가까워서 10만원씩 돌리면 안되겠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현금 100만원을 건네 준 행위 및 이를 제공 받은 행위
- 선거인이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다른 선거인에게 후보자의 장점을 설명하고 곧이어 그 곳을 방문한 후보자를 소개시켜 줌은 물론 후보자가 자리를 떠나자 “편지다”하고 말하면서 현금 10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제공한 행위
- 후보자가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 7명에게 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행위
- 후보자가 선거인을 찾아가 선거에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의 상의에서 현금이 든 봉투 1개를 꺼내 선거인에게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시한 행위
- 후보자가 선거인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현금 100만원을 건네 준 행위 및 이를 제공 받은 행위(대구지방법원 2010. 4. 6. 선고 2010고단773 판결)
- 후보자의 친형이 동생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의 집을 찾아가 선거에 출마하는 동생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인사하면서 금전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행위(울산지방법원 2007. 10. 18. 선고 2007고단1767 판결)

2. 상근 임직원의 선거운동금지 등(규정 §13⑨)

- 주 체 : 중앙회 상근 임직원
 - 금지기간 : 언제든지
 - 내 용
 - 선거지원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에 가담하는 행위
 - 선거지원을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 ※ 누구든지 상근 임직원에게 상기 행위를 요구할 수 없음.

할 수 있는 사례

- 중앙회가 중앙회사업과 관련된 유언비어에 대하여 중앙회의 자본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당해 중앙회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나 기관지·내부문서·게시판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 방법에 따라 소속 회원에게 알리거나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 ⇒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별도의 해명서를 작성, 전 회원 대상 배부행위는 규정 위반

할 수 없는 사례

- 상근 임직원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상근 임직원이 선거인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회장님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아니 하였다.”라고 발언하는 행위
- 상근 임직원이 소속 직원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 상근 임직원이 후보자로 출마하는 중앙회장의 인터뷰 자료 등을 작성하는 행위
- 상근 임직원이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용 기획문건 등을 작성, 후보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사전선거운동의 금지

1) 사전선거운동의 정의(법 §53①, 규정 §13⑥)

○ 사전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이외에 행해지는 모든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전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중이라도 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여야 함.

⇒ 선거운동기간전 선거운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137①)

2)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하는 행위(규정 §13⑥)

○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 이하 같음.)에게 선거와 관련한 문구와 함께 입후보예정자의 성명, 사진, 경력 등이 기재된 연하장·초청장·기념품·선물·축전·축하카드·달력 등을 발송 또는 배부하는 행위

○ 정회원의 단체행사(관광·야유회, 체육대회 등)에서 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를 소개하거나 지지를 당부하는 행위

○ 정회원의 공식행사에 입후보예정자의 직명이나 성명을 표시하여 또는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금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

○ 선거인의 관혼상제시 통상적 범위의 축·조의금을 내는 행위

○ 공론화되어 있는 조합계의 사고·친목모임에서 통상적인 각출 또는 순번에 의한 경비 부담으로 보기 어려운 경비부담 행위

○ 선거인을 대상으로 주요기관·시설(관광지 포함)등에 대한 관람을 주선·알선 또는 후원하거나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인터넷, 컴퓨터통신,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본인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을 진술 또는 게시하는 행위

○ 선거와 관련하여 방송, 신문, 잡지 기타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본인의 사진, 경력, 본회 운영에 대한 포부 등을 선전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게재하는 행위

○ 선거인으로 구성된 단체·조직 등의 운영비나 행사비 등을 찬조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인에게 점포나 사무실 등 시설이나 기기를 임차료 또는 사용료를

받지 아니하고 대여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소정의 회비를 징수하지 않고 출판기념회 등 행사를 개최하여 선거인에게 무상 또는 정가보다 싼 값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선거인의 지지도를 조사하는 행위
-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행위의 시기, 목적, 내용, 방법, 대상, 사회상규를 기준으로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으로 인정하는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업무활동의 일환으로 산업현장 등을 시찰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 또는 연말연시를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장이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 언론기관에 업무상 보도자료를 제공하거나 언론기관의 취재에 응하여 단순히 인터뷰를 하는 행위
- 출판사 등이 서적의 출판을 기념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행위
 - ⇒ 출판기념회를 명목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운동기간전에 행하는 일체의 선거운동 행위
 - ⇒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도 선거운동기간 전에 하는 때에는 위반
- 일상적·의례적 활동범위를 벗어나 각종 행사장을 계속적으로 방문하여 선거인 등을 대상으로 악수나 인사 등을 하는 행위
- 선거인의 사업장(조합 등)을 방문하여 지지호소·선거공약 발표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하는 행위

- 후보자가 선거일에 “이번 선거에 기호 ○번으로 출마했으니, 잘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 죄송합니다만 마지막으로 한 표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광주지방법원 2012. 9. 7. 선고 2012고단3657 판결)

4. 호별방문 등의 금지(법§53④, 정관 §53③, 규정§13⑦)

- 주 체 : 회장이 되려는 사람
- 금지기간 : 언제든지
- 주관적 요건 : 선거운동을 위하여
- 내 용
 - 정회원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 정회원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 ‘호’의 의미 및 판단기준

- 호별방문죄가 성립하는 방문 장소의 전형적인 예는 ‘거택’이라고 할 것이나, 호별방문죄가 성립하는 ‘호(戶)’에는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 시장, 점포, 다방, 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으로서, 비록 피방문자가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경우라도 불특정·다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된 비공개적인 장소도 포함됨.(2007. 3. 15. 선고 대구고등법원판결 2007노38)

○ ‘호별방문’의 성립요건

- 호별방문죄는 타인과 면담하기 위하여 그 거택 등에 들어간 경우는 물론 타인을 면담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피방문자가 부재중이어서 들어가지 못한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임.(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315 판결)
- 거택 등의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대문 밖에 서서 인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방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대법원 2000. 2. 5. 선고 99도4330 판결)
-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호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연속적인 호별방문이 되기 위해서는 각 방문행위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 근접성은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각 호를 중단 없이 방문하여야 하거나 동일한 일시 및 기회에 방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선거의 시점과 법정 선거운동기간, 호별방문의 경위와 장소, 시간, 거주자와의 관

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단일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둘 이상 조합원의 호를 계속해서 방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 성립이 인정됨.(대법원 2010. 7. 8.선고 2009도14558 판결).

○ 벌 칙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137②)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선거인의 사무실, 가정집을 방문하여 선거인에게 지지를 호소한 행위
 - ※ 선거인과 면담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피방문자가 부재중이어서 들어가지 못한 경우,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한 채 대문밖에 서서 인사를 한 경우, 인터폰 상으로 또는 인터폰을 통하여 밖으로 나오게 한 경우도 역시 금지되는 호별방문에 해당함.
-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연합회 사무실, 호텔, 식당 등에 모이게 하는 행위

5.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행위 금지(법§53⑤)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언제든지
- 내 용
 -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연설, 벽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된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 벌 칙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137②)

할 수 없는 사례

-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신고한 바가 없음에도 신고자라고 공표한 행위(대전고등법원 2002. 11. 15.선고 2002노581 판결)
- 허위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선거인들에게 보여주어 읽게 하는 행위(대법원 2003. 11. 28.선고 2003도5279 판결)

6. 법정 선거운동방법 외의 선거운동 금지(법§53⑥, 정관§53⑤, 규정§13④)

- 주 체 : 누구든지
- 내 용 :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행위 외의 선거운동 금지
 - 선전벽보의 부착, 선거공보와 인쇄물의 배부
 -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 개최
 -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컴퓨터통신(전자우편 포함)의 이용
- 벌 칙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137②)

III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법 § 143, 정관 § 53조의3)

- 지급기준
 -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제137조제1항제2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 포상방법
 -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반사실 조사·확인 후 ‘신고포상금지급지침’에 따라 지급 결정
- 포상금액 : 최고 3억 원(동일인 한도 3.5억 원)

IV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법§ 139)

○ 당선인의 행위로 인한 당선무효

-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서 법 제137조제1항 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